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  
합계획”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

적인 제도로 민선 지방자치제 출범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가운영체계로서 확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심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의 확대 및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주민주권의 구현으로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방자치분권 및 주민 참여민주주의 교육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분권의 이해와 시민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